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00 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이정문・이개호・박 정

이인영 · 이학영 · 김남근

한민수 • 이연희 • 김동아

문진석 · 조승래 · 강훈식

박수현 • 이훈기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40%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에 비해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,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정이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.

이에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, 시장금리, 물가상승률,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,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3조).

법률 제 호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"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"를 "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, 시장금리, 물가상승률,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정이율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법정이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진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법정이율) ① 금전채무의	제3조(법정이율) ①
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	
는 판결(심판을 포함한다. 이하	
같다)을 선고할 경우, 금전채무	
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	
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	
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	
는 소장(訴狀) 또는 이에 준하	
는 서면(書面)이 채무자에게 송	
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<u>연 1</u>	<u>한국</u>
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	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,
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이 적	시장금리, 물가상승률, 그 밖에
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	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
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	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<u>하는 이율에 따른다</u> . 다만,	
「민사소송법」 제251조에 규	
정된 소(訴)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